

발송번호: 9-5-2018-048963869
발송일자: 2018.07.19.

수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424
호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 (비산동, 신안메트로칸)

김영동

14047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결정서

출원인	성명	데이터 엠 리미티드 외 3명 (특허고객번호: 520180152622)
	주소	중국 홍콩 카오룽 침샤추이리스트 모디로드 62, 웅 온 플라자 10층 1002호
대리인	성명	김영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424호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 (비산동, 신안메트로칸)
발명자	성명	고광호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지장골길 161, B동 202호(죽정동, 남해아파트)
발명자	성명	전진호
	주소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43, 303호 (괴안동)
발명자	성명	정승현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3길 104, 702동 514호 (등촌동, 등촌7단지 주공아파트)
출원번호	호	10-2018-0037672
발명의명칭	청	탄소배출감축에 대하여 암호화폐로 보상하는 암호화폐 보상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시간 측정장치
청구항수	수	6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특기사항]

이 건 발명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2018.07.19 까지 출원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날 이후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진입하는 출원에 의한 특허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끝.

[참고문헌]

1. KR1020120046519 A
2. KR1020130090977 A
3. KR101538354 B1

2018.07.19.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정보기술융합심사과

심사관 이재근



<< 안내 >>

【 등록료 납부, FD,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시, 특허기술상신청 안내 및 등록공보 확인 등 】

1. 등록료 납부안내
 - o 특허료 납부예정금액(1~3년차분) : 279,000 원(1~3년차분을 정상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 139,500 원(50% 감면대상자인 경우), 83,700 원(70% 감면대상자인 경우)
 - o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납부기간 중 특허료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o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특허료 납부 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FD출원 후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기 전에 보정을 한 자는 특허료납부서 제출시까지 보정내용의 전부가 반영된 최종본의 FD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2018, 7. 1. 설정 등록부터 등록증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경우, 특허로의 「전자등록증 수신함」과 특허고객번호상의 e-mai을 통해 전자등록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시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5. 내국인은 매년 3월, 9월경 특허기술상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jsp/kiponet/mp/patentprize/index.htm>)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아래 각 부문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고안)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o 세종대왕상 등 부문: 권리 또는 실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의 발명(고안)
 - o 홍대용상 부문: 개인, 중소기업, 산학협력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원으로서 권리 또는 실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의 발명(고안)

※ 상기요건 모두 충족시 두 부문에 중복 신청 가능
6.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만, '12.3.15. 이후의 출원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경우에 한 함)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 등록공보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7일 전후로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공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직권 보정사항이 있으면 평균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www.ipacademy.net)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이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 042-481-5313(담당심사관 이재근)로,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